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-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 축소(안 제2조)

	현행	개정안
감면율	• 100분의 100	•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• 2017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50

나. 상위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(안 제8조)

다.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조례 제894호 부칙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5. 3. 19. ~ 4. 8 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 의견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5. 4. 21)
- 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사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100분의 100”을 “감면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,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지방세법”을 “「지방세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 중 “1,000분”을 “1천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3조제1호의 단서”를 “제3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,000분”을 “1천분”으로 한다.

제18조 후단 중 “제99조”를 “제184조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제96조”를 “제180조”로 한다.

조례 제89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“2015년”을 “2017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감면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,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-----.</p>
<p>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를 면제한다.</p>	<p>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</p>	<p><삭 제></p>

하한 것을 말한다.

1. 특급호텔 : 20퍼센트

2. 특급호텔 이외 호텔 : 10퍼
센트

제11조(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
세 감면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
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
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
사업자(해당 건축물의 사용승
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
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
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
부여받은 자를 말한다)가 주택
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
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
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「지방세
법」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
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
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
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
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
터 3년간 1,000분의 1.5를 적용
한다.

제13조(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
감면) ①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호

제11조(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
세 감면) -----

----- 1천분-----

제13조(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
감면) ① -----

----- 제3조제1호

의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

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에 불구하고 1,000분의 1.5로 한다.

제18조(감면자료의 제출)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<제894호, 2012.12.31>
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-----.

② -----

----- 1천분-----.

제18조(감면자료의 제출) -----

----- 제184조-----
-----.

제19조(중복감면의 배제) -----

----- 제180조-----
-----.

부칙<제894호, 2012.12.31>

제3조(적용시한) ----- 2017년 -----
-----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경제국 세무1과 이석우
연 락 처	02-3153-8702